

김응 / 5월 / 실전 GS / 7회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독성 평점	응시인원
528985	18	12.5	15	12.5	58	1	3.85%	5	26
541737	18	12.5	16.5	11	58	1	3.85%	6	
541841	17.5	12	17	10.5	57	3	11.54%	5	
541918	18	12	16	11	57	3	11.54%	5	
541743	18	12	14.5	12	56.5	5	19.23%	6	
541754	17.5	10.5	16	12.5	56.5	5	19.23%	5	
542941	16	13	16.5	11	56.5	5	19.23%	5	
541811	16	12.5	15	10.5	54	8	30.77%	6	
541765	17	10	15	11	53	9	34.62%	6	
541727	15	11	16	10.5	52.5	10	38.46%	6	
541773	15.5	10.5	17	9	52	11	42.31%	7	
541751	17.5	9	15	9.5	51	12	46.15%	6	
535461	16	10	13.5	11.5	51	12	46.15%	6	
542761	16	11	15.5	7.5	50	14	53.85%	5	
541798	14.5	9.5	16.5	8.5	49	15	57.69%	6	
542868	13.5	10.5	15.5	9.5	49	15	57.69%	5	
537426	18	10.5	14.5	4.5	47.5	17	65.38%	6	
541759	16.5	10	15	6	47.5	17	65.38%	5	
542772	15	11.5	10	10.5	47	19	73.08%	5	
542854	14	7.5	15	10.5	47	19	73.08%	4	
542691	12.5	6.5	16.5	11.5	47	19	73.08%	6	
541957	15.5	8.5	15	6.5	45.5	22	84.62%	5	
542201	15	7.5	16	7	45.5	22	84.62%	5	
542865	14	9.5	13.5	7.5	44.5	24	92.31%	5	
536108	14	5.5	15.5	9	44	25	96.15%	4	
541749	17	10.5	15	0	42.5	26	100.00%	6	

<p style="text-align: center;">김웅/5월/실전GS/7회/1번</p>	<p>채점자</p>
	<p>이정은</p>
<p>1. 전반적인 총평</p> <p>디자인권 침해 및 요건 판단에 관한 문제입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설문 1 : 간접침해와 직접침해로 나누어서 판단하셔도 좋고, 침해에서 유사판단 위주로 서술한 답안도 비슷한 점수를 부여했습니다.</p> <p>설문 2 : 확대된 선출원주의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으로 가셔야 합니다. 무효심판이므로 이해관계 존부에 대해서 짧게 포섭해주시는 것이 인상 면에서 좋았습니다.</p> <p>설문 3 :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에 관해서는, 창작비용이성은 “창작수준” 이 낮은 경우에 위반인바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에 대해 각각 언급해주시면서 결론을 내린 답안의 인상이 좋았습니다.</p> <p>3. 소결</p> <p>디자인보호법은 다들 비슷하게 잘 쓰셔서 최대한 판례 문구 살려서 사안 포섭해주시고, 조문을 누락 없이 써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김웅/5월/실전GS/7회/2번</p>	<p>채점자</p>
	<p>이정은</p>
<p>1. 전반적인 총평</p> <p>복수디자인출원과 관련디자인출원 등에 관한 문제입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설문 1 : 복수디자인에 대해서 요건 및 일반론을 서술하시고, 복수디자인출원 가능 여부를 포섭하시면 됩니다.</p> <p>설문 2 : 우선심사와 분할출원에 대해 크게 서술하신 답안이 가장 인상이 좋았으며, 그 외에 다른 논점들이 섞인 경우에는 주 논점이 약하게 보여서 감점 있었습니다.</p> <p>설문 3 : ‘제40조 1항 위반이다 > 분할하거나 보정해야한다’ 의 흐름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주 논점을 크게 목차로 현출해주셔야 합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부 논점이 크게 쓰여 있거나, 목차에서 어떤 내용을 쓰려고 하는지 잘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드렸습니다.</p> <p>설문 4 : 단독디자인으로 보정한다는 결론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 문제 또한 답을 틀리신 경우는 많지 않았으며, 답안인상 및 법적근거 서술 정도에 따라 점수를 달리 부여했습니다.</p> <p>3. 소결</p> <p>답을 틀리신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p> <p>주 논점을 강하게 / 목차로 어떤 내용 쓰시려고 하는지 잘 보이도록!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p>	

김웅/5월/실전GS/7회/3번	채점자
	이정은
<p>1. 전반적인 총평</p> <p>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문제입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설문 1 : 답변서발송 / 무효심판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구성으로 쓴 답안지보다 항변의 종류에 대해서 길게 서술한 답안이 더 많았습니다. 적절하게 강약 조절한 경우에는 모범답안처럼 서술한 경우와 같은 점수를 드렸습니다.</p> <p>설문 2 : 자유실시디자인의 항변에 대한 누락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무효의 항변으로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에 대해서 언급한 답안은 적었습니다. 양자를 함께 적어주시면서 사안 포섭 시 “창작비용이성 흠결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대비할 필요도 없이 자유실시디자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고 포섭하시면 가장 바람직한 답안이라 생각합니다.</p> <p>설문 3 : 특허법에서도 겹치는 논점이라 다들 잘 쓰셨습니다.</p> <p>3. 소결</p> <p>다들 잘 쓰셨으나, 설문 2에서 무효의 항변 누락만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p>	

김웅/5월/실전GS/7회/4번	채점자
	이정은
<p>1. 전반적인 총평</p> <p>유사판단에 관한 문제입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설문 1 : 일반론을 기재하는 문제입니다. 설문 2 : 신규성 판단을 위해서 유사판단이 필요합니다. 동일 물품이라는 점을 포섭하신 후에, “전체적으로 심미감이 유사 >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 > 유사하다 > 신규성 흠결이다” 의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풍부하게 사안 포섭하셨는지, 판례 문구를 활용해서 포섭하셨는지에 따라 달리 점수를 부여했습니다.</p> <p>3. 소결</p> <p>유사판단이 필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풍부한 사안 포섭이 중요합니다.</p> <p>답안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p>	

[문제1]

4.5

1. 사실 (1)

1. 광해 여부 판단

(1) 광해 요건

유해한 대미인으로 대하니 광해한 것이 없는 것이니
대인인 동안. 유해범위를 양로서 사해한 경우 대인인
광해에 해당한다

(2) 광해범위

사실의 경우, 특히 대인인으로 유해한 것이 유해범위
광해한 사해범위 사해한 사해인 없으며 동해한 경우
판해한 경우 양로서 사해인 인으로, 아하 양 대인
이 사해 동안. 유해한 문제 있다.

2. 대인인 유해한 문제

(1) 대인인 동안. 유해한 문제

대인인 유해한 문제로 대인인 유해한 동안 유해한
것을 양으로 한다. 대인인 유해한 동안 유해한
경우는 대인인 유해한 문제이다.

(2) 대인인 동안. 유해한 문제

사실의 경우, 대인인 유해한 문제가 동해한 경우 동해한 경우
유해한 동안. 유해한 문제가 양로서 사해인 인으로, 아하 양 대인
이 사해 동안. 유해한 문제 있다.



그의 통상적인 지각으로 3개의 무늬들이 해당하여
당연히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6.5

II. 사실 (2)

1. 부정판

위의 디자인 등록 권리자가 인정받지 못해 디자인을 지
속해 관해하여 권리를 잃은 것은 그의 디자인 등록 권리 권
이 공익을 지어주. 그의 디자인이 상표, 실용권,
특허 비용이나 무늬들이 많지 강하다.

2. 상표, 실용권 위반 여부 (상)

(1) 판단의 전제

상표(시)에서 판단 할 때의 같이 위 디자인은
문장이 새 바둑판 하에 바둑판 디자인이다.

(2) 위반

때문에 그의 디자인은 디자인의 등록사유 - 유익으로
권한 상표, 실용권 위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항상비용이나 침해 여부 (상)

(1) 항상비용이나 비. 권리 (지각으로 2회)

그런데 후자의 통상의 디자인은 쉽게 침해 가능한
디자인 등록받은 것이다. 쉽게 침해 가능할지



대인권을 보충받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2) 경비비용이산 판단 기준

경비비용이산은 산상 요건은 만족하는 경우가 판단된다.
사면 경우 권리 출제나임은 권리 출제 대인권 부여
태로 위 권세를 만족한다.

(3) 경비비용이산 판단 방법 (출제)

후자의 대인이 산상 대인권은 그대로 인정된 것이
불러와서, 출제 권리와 출제 요건이 해당해서 산상
과.가능, 발행할 것이 불러와서 경비비용이산 출제에
해당 한다.

(4) 40만

권리 '권리'에 도대한 권익권 요건은 권리 '권'에 관한
대인이 도대한 권익권 요건과 출제요건으로 산상
출제요건은 '그대로 인정된 것이 불러와서 경비비용이
산 출제에 해당 한다.

4. 사면 기준

권리 출제나임 경비비용이산 출제 (출제권과 출제)에
해당해서 권리 출제나임 위 면제자로 권로 위
산상 권리가 되는 경우 출제권 가능 한다.

18

출제

2. 새로운 해법

위의 제1항 A 및 B는 모두 동등물인 경우 이 경우
다라인에서 동등물이라는 용어가 아닌 동등물에 속하
는 개념으로 하되, 100%에러 다라인, 분자하여 표현
되어 있는 한 경우, 불수내의 동등물이라는
것이다.

3

1. 새로운 (나)

1. 제1항 A의 제1항에 원상치 상태 (제1항 2항)

(1) 원상치 상태 (제1항 2항)

불수내의 동등물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원상치라는 개념은
제1항 1항 광범위 개념에 해당한다. 이항 제1항에 대해서도
원상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 제1항 1항 광범위

제1항 1항 (제1항 2항) 즉, 제1항 동등물이라는 용어에
관한 제1항 동등물이라는 용어는 다시 하위라고 하는
되는 경우, 또는 제1항 동등물이라는 용어에
관한 제1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 불수내의 동등물

(1) 불수내의 동등물 (제1항 2항)

제1항의 제1항은 1항의 동등물 1항의 제1항

특수권으로 불합하게 다른 등록 권리 하는 것이다. 권리에서
제외된 (다른 (등록 위반은 불법이 아니다.

(2) 불합 권리의 요건

불합 권리의 (다른 (권리 요건 내(402)는 위반에서 그
이상의 다른 (다른으로 불합하게 불수권으로 권리를
권리에서 제외 할 수 있다.

3. 사물의 배제

다른 권리에 다른 A에 대해서도 ~~인정~~ 인정한다
불합 권리 할 수 있다



IV. 사물 (3)

1. 예외되는 권리 이유

(1) 다른 다른 등록 권리 (제403 160)

다른 등록 권리로 다른 (다른 등록 권리를
해제 한다

(2) 불수권으로 등록 권리 (제413 160)

불수권으로 등록 권리를 다른 불수권으로 해제
해 한다.

(3) 다른

무엇을 권리에서 다른 C에 다른 D로 해
있을 다른 다른으로 권리한 경우 다른 다른

은 원 (제402 항), 복수대인 등 중의 수(제413)에 해당한다.

2. 증빙 방안

(1) 원 (제483)

발명개시점까지 무이 부분내인 C나 부분대인 D를 양쪽 임의변수에 변화하여 나타낸 원에 관한 항의 원 기재내용을 증빙 할 수 있다.

(2) 분해 (제403)

제402 항의 1항의 413 항의 경우 분해한 원상에서 양항으로 부분대인 C나 부분대인 D 중 어느 하나를 분해 증명 할 수 있다. 이때 분해한 원상에서 부분대인 을 제외하 나고 부분대인 D에 대한 분해항의 기원은 상세하는 보충해야 한다.

3.5

IV. 사실 (나)

1. 예시되는 기재내용

(1) 관제대인 중의 원상. 즉 (제452)

기부대인인 원상 대인은 관제대로 변하기 위해 기본 대인 중의 수에 대해 기부대인인 원상 대인은 관제대로 증명 할 수 있다.

(2) 원



판권리인 국어시 기출대어 20인 유사한 단어
기출대어 관련된 부기 해 오mm 판권리인으로 등
받을 수 있다 (제35조 1항)

(3) 시안

권리인 A는 원래 권리인 B, C, D는 각 원래 내면 구분부의 이익으로 구분리
이므로 영 라이선스 목적 지니는 상해는 부속한
대어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35조 1항의 권리인
영이 기출대어 20인 유사한 것이 모든 영사제 및
유선로 관련대어 등을 들 수 있다.

2. 극복 방안

① A가 권리인 A와 권리인 B, C, D는 권리인
관련하면서 권리의 대어 등을 권리인 영 (제
48조 2항) 위 개시유선 극복 할 수 있다.

② 또한 A와 D 대어 및 20영 대어, 영
이러한 영사, 영사 영사 영사, 영사 영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사 영사 영사
유선로 가능할 것이다. (제35조)

12.5

<공>



특수대리의 권한은 대리인의 행위·양행은 전제권
 권대행위 부여된다고 하는 한편 권리·공리
 에 주권 행위로 부터 행위·양행이 가능하리
 면서 특수대리의 양행도 역시 권대행위를
 할 수 있다.

(2) 소판

그러나 위의 특수대리의 양행비용은 행위는 이원권
 대행위인 양행임을 주장할 수 있다.

3. 권리 양행의 하한 기법(2부)

(1) 유상기

특수대리에 유상기 명백한 2대리에 기한
 해 계약에 관하여 권대행위 등은 권리양행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양행의 양행비용
 양행 2권은 유상기 특수대리에 양행비용이
 양행에 양행에 양행할 수 있다.

(2) 내담

그러나 위의 특수대리의 기한 해 계약에
 양행의 양행을 주장할 수 있다.

4. 양행의 기법

그러나 양행에 있어 특수대리의 양행비용은 양행

새로 추가 받은 특허권은 권리 행사기간이 만료된
 이 권리 행사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권리행사에 응하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한해
 동안의 권리 행사는 한해 단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
 이므로 소위 권리행사의 기간 상한은 **연단**으로
 있다.

II. 제 3항 (3)

4

1. 권리행사의 효력 발생 **시기**이다

(1) 권리

권리행사의 효력 발생 시점 등 권리행사의 효력 발생의 방법
 등과 관계 없이 권리 행사 기간 동안 권리행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권리행사의 효력 발생 시점이 있다.

(2) 기간

권리행사의 효력 발생 시점 등 권리행사의 효력 발생의 방법
 등과 관계 없이 권리 행사 기간 동안 권리행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권리행사의 효력 발생 시점이 있다.

2. 새로운 권리

권리행사의 효력 발생 시점 등 권리 행사 기간 동안 권리행사에 응하지



바탕으로 동 대역의 기밀인 특이 유전자로
동 대역의 유전자에 해당한다.

(3) 신호

따라서 유 유전자인 A는 신 유전자 유전자
에 해당하므로 신 유전자 유전자 중 하나.

3. 신호에 대해

따라서 유 유전자인 신호 유전자 유전자
유전자 유전자인 신호 유전자이다.

12-5

신호 유전자
← 유전자 →

<문제 17>

2. 출발 (1)

1. 각각의 특정 실시권 - : 출제 기 922
각각의 실시권은 특정 각각의. 이와 유사한 각각의 실시권 권리를 특정한다.

2. 합계 권리 권리

① 특정 각각의 권리 ② 보통 각각의 권리 실시 ③ 보통 각각의 권리 실시 ④ 특정 각각의 권리 권리 ⑤ 특정 각각의 권리 권리 ⑥ 특정 각각의 권리 권리

3. 출발 권리 권리

(1) 출발 권리

① 출발
② 출발
③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출발

(2)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출발

(3) 출발 출발

'출발' 나 '출발'은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출발

4. 출발 출발

(1) 출발

① 저작권이 표시된 것은 물론. 표시 없이 간접간판 판권자에게

② 실적을 통한 심의감이 바탕을 두어야 함.

(2) 원칙

디자인의 개별성이 아닌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상이한 심의감을 주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전체적 이미지가 유사하면 개별적인 특성이 차이가 있어야 유사한 것으로 본다.

(3) 사안적 경우

특히 증기에 표시된 장미꽃 모양과 같이 유사하여 표시된 장미꽃 모양의 심의감이 '같이 표시' 하다.

5. 결론 - 상충

① 물이 비유사하여 ② 전체적인 이미지가 같이 유사하다. ~~상충에 주장이 불가하다.~~

II 결론(2)

5-5

1. 유출된 디자인. 취지 - 디자인이 1212

중심상 하자가 다른 디자인을 모방시키기 위한 것이라.

2. 학제권 출원권자

(1) 취지 - 디자인이 1212 3항

디자인 등록 출원권이 출원권자, 출원 후 출원권자의 디자인이 등록된다. 또한 유사한 경우 출원권이 불가하다.



(2)	취지
	신출전투기를 보완하여, 출전 후 출전중개. 중중권 권이 특수 배제권을 부여하기 가능이라
(3)	취지 2건
	출전권이 같은 정권은 권중개 권이며, 행정부가 같은 한 권이 가능하다.
(4)	객체적 2건
	각각의 '출' 라 동일 기사화하여 한다. 취지권은 ① 기능. 용도가 중중권 ② 형태가 기사화하여 ③ 대비가 능할 것은 문헌적기사 한다
(5)	시기적 2건
	출전권 권이 출전권이며, 출전 후 출전중개. 중중권 권 타 출전이 없어야 한다.
3.	사안적 2건
(1)	확대권 신출전투기 취지 명 - 2건
	2건 기사적이 문헌권 장이름다 취지 중기에 문헌권 중기 형태가 취지 기사화나, 기사이나 중기 기 능. 용도에 있어 중중권 권이, 확대권 신출전투기 취지가 가나다.
(2)	심판의 불라 - 1건
	따라서 취지 취지 문헌심판은 기사 없이 1건 심판 내려질 것이다.

II	실용(3)
1.	공지 기술의 권리
	무이 출원한 특허인 2025. 1. 2 특허 공지를 신청한 한편 바, 이는 권리 출원인 2025. 8. 1 보다 앞 서 공지 기술의 권리를 갖는다.
2	신기술 위반 여부 - 조
(1)	신기술 권리 취득에 대해 조항 1항 중지권은 아닌 것이므로 특허인에게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는 바, 공지 기술과 동일·표현된 것과 같은 것을 할 수 있다.
(2)	신기술 여부 무이 공지가 권리 취득을 목적으로 작성하여, 신 기술 위반이 아니다
3.	창작 비평의 권리 여부 - 조
(1)	창작 비평의 권리 취득에 대해 조항 2항 산업 발전을 위해, 통상의 직능을 가진 자가 공평하게 주위 상태에서 쉽게 창작 가능한 것을 불가하다.
(2)	하나의 저작자의 경우 - 저작 작성권 행사는, 여러 저작자의 표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저작자에게 기해서도 창작 비평을 할 수 있는 것은 인정된다.
(3)	창작 비평의 권리 여부

2.	취지
	하나의 종류에 속하는 여러 디자인들 한 번에 출원하여, 출원인의 편의성을 위하여 심사 절차의 효율적 관리를 기함이다.
3.	조건
(1)	같은 종류에 속할 것
	여러개의 디자인이 사실상 같은 종류에 하나의 종류로 출원하여야 한다.
(2)	100 이내일 것
	최대 개수는 100개이며, 100개를 초과할 경우 별개의 출원으로 하여야 한다.
(3)	분리하여 출원할 것
	각 디자인마다 별개의 크기로 작성하여, 디자인 별 2분리하여 출원하여야 한다.
4.	사안의 양
(1)	같은 종류인지
	전체 디자인 A, 특정 디자인 B, C, D는 모두 출원에 관한 디자인인지, 디자인 출원기 다른 종류인지 구분한다.
(2)	100 이내인지
	총 4개의 디자인으로, 개수 4개로 한정한다.
(3)	분리하여 출원

	<p>무게 출제시, 전체 자격인 A, 부분 자격인 B, C, D를 각각 별개에 도면에 알린 번들을 붙여 붙여본다.</p>
(4)	<p>같은 <u>가능</u> 부분 자격인 출제시 도면을 2개 안착하면, 부분 자격인 등 출제 가능하다.</p>
<p>3.5</p>	
II	<p>실문(2)</p>
1.	<p>인생사 신청 가능 - 가능</p>
(1)	<p>인생사 제2 커리. 커리 - 법 제 62 출제시 커리란에 2개 안착 및 출제상 필요에 의해, 본래 심사 순서에 앞서 인성사 심사하는 제2이다.</p>
(2)	<p>부속 자격인 출제시 법 - 법 제 62 2항 부속 자격인 출제시, 특허청장은 일부 자격인만 심사할 수 있다.</p>
(3)	<p>사안의 경우 무가 자격인 A, B, C, D를 부속 자격인 출제하였으므로, 전체 자격인 A에만 인생사 신청이 가능한 A에 대해 하역만 인생사 신청이 가능하다.</p>
2	<p><u>분할출원</u> 가능 - 가능</p>
(1)	<p>분할출원 커리. 커리 - 법 제 502 출제시 커리 커리의 편지, 커리(1) 커리를 기재, 여러</p>

각각인들 하나씩 각각으로 출원한 경우 별개로 출원
이 가능할 수 있다.

(2) 예

① 제 402를 위반하여 2 이상씩 각각을 (각각
출원) 하거나 ② 복수 각각을 출원 시 가능하다.

(3) 사안과 같이

특정 각각 A, B, C, D를 복수 각각 출원하였으므로,
특수 권리 부여를 위하여 새로운 출
원으로 분할이 가능하다.

II 실문(3)

25

1. 제 402의 기각

(1) 제 402 (항) 위반

각각은 (각각)이나 (각각)을 출원) 하거나
하든 바, 하나씩 2개씩 둘 이상씩 출원) 한
변할 경우 제 402 (항) 위반이다.

(2) 제 402 (항) 위반

복수 각각을 출원 시 (각각)이나 (각각)을
출원) 하거나 하므로, 하나씩 2개씩 각각
같은 같이 각각을 복수 각각 출원) 한
예) 위반이다.

2. 권리 범위

(1)	양해 절차 내에서 보정
	보정을 통하여 부분 저작권 D를 3면에서 삭제하고 분라하여 표준한 새로운 3면을 등록한다. 이때 출원 시에 저작권의 수가 변동이 없는 경우 보정이 필요 하라
(2)	분할 출원 부분 저작권 D를 3면에서 삭제보정 후 / (저작권 등 등록권 취득이요) 보정 기간 내에 분할 출원이 가능 하라.
IV	보정 (㉔) 
1.	관련 저작권 개조
(1)	구체 - :출 제 352 저작권권은 자신의 기본저작권이란 유사한 저작권에 대하여 출원된 3면 기재의 관련 저작권 등록 출 원이 가능하다.
(2)	취지 저작권권은 변경하기가 협소한 바, 유사한 저작권의 등록을 통해 넓은 권역범위를 확보하기 가능하다.
(3)	㉔ ① 특권권 신출권. 신등록 저작권의 유사하게 출원 하라 ② 기본저작권과 관련저작권이 유사하게 하라

	할 권리를 주장한다.
2	<p>① 허위한 저작권권리 존재 ② 부인받기 배기 사용</p> <p>③ 일조기 실시 ④ 정당한 권리의 부존재 ⑤ 허위 권한 사항이 없거나 ⑥ 권능행위 기본 것</p>
3.	<u>권리 침해</u>
(1)	<u>창작 비평의 자유</u> 권리 주체 저작권은 사행 행상기 정판라 사각 기행의 목적을 맞게 공판권인 것을 배기 안 들어진 경우 배기보아 창작 비평의 자유를 보 기다.
(2)	권리 행변 존 권리 저작권이 - 창작 비평의 자유를 기 르 권능행위의 행변, 권리실시 저작권의 행변이 가능하다
(3)	<u>압박에 응복 및 부당행위 대응</u> 권리 유권사권을 기호, 행해가 기세권 압박에 를 응복 하거나 유권 행해를 기호 기가 가능하 다.
(4)	<u>저작권 포기 권리</u> 무가기 저작권에 유권사항이 기호 권리를 저작권 권을 포기하거나 권능할 수 있다.

(5) 유연성만 향상

고온 쿨링 과정을 실시하고 모양을 받은 이차전지
전지 바, 활극 비동성 기판을 이차 유연성만 향
상 가능하다.

(6) 소극 전극층만 유연성만 향상

고온 라신크 실시 과정에서 라틴층만 유연성만
향상 소극 전극층만 유연성만 향상이 가능하다.

II 실용예(2)

0.5

1. 전극층만 유연성만 향상. 처리 - 2차 기 (223)

전극층만 유연성만 향상 하는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특이성
이 심한 층을 형성 할 수 있다.

2. 라틴층만 유연성만 향상

(1) 소극 기판의 층 - 2차 기

활극 대상 전극층이 중립 전극층과 쿨링. 건조한 층
이전 전극층과 배합할 필요가 없이 층을 따라
전극층에 유연성 향상을 준다.

(2) 활극 비동성 기판의 층 - 2차 기

활극 대상 전극층이 중립 전극층, 특히 양극층 형성
양극. 색채. 이온의 흐름에 따라 쉽게 활극 가
능한 층을, 층을 따라 배합할 필요가 없이
이 전극층에 유연성 향상을 준다.



(3)

경우

문인 형해시 자의 실시 자의인의 행위를 불허하면 신
축하인 할당으로 인해 판단이 가능한 것이 되
는바, 제정자가 타당하다.

5. 자의 실시 자의인 명 - 주

무의 자의인은 사각등 형상을 양판라 사각 기둥
형상 목적을 갖게이 리본적 못 형상을 쓰는 바,
특수한 직선 기판라 형 양각 가능하여 자의
실시 자의인이 된다

6. 심플 명 - **인공심장**

이 실시 자의인이 자의 실시 자의인으로 무의 자
의인인 인공심장에 의해 같은 바, 이 경우
인공심장 복인상판은 인공심장이 형성된다

4.5

II 심플 (3)

1. 인공 심장을 수축 - 이차 제 2차 방향

무의 심장을 확장 시, 자의인인인 제정자를 수축시킨 것
은 된다

2. 복인의 이차 명

(1) 인공심장

이 실시 자의인이 수축할 한 경우, 인공심장 복인
상판의 복인의 이차 제정자를 수축시킨다.

(2)	<p>원격으로 복제된 '원' 하는 저작권의 권리 복제권을 취득한 후, 저작권이 소멸할 때 소멸한 것은 복제권이기 때문이다.</p>
(3)	<p>배판권 관계 소멸한 후 다시 권리 관계 소멸하면, 소멸 권의 권리관계를 부정할 필요가 없이 복제권 기 준을 인정해야 한다.</p>
3.	<p>복제권 기 <u>판판시정</u></p>
(1)	<p>원격으로 복제된 복제권 기는 소멸권. 법원이 저작권사상항으로, '소멸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p>
(2)	<p>상대권 기 기 취득한 원격으로 복제된 소멸 권 기 복제권 기 원상권 취득한 후 소멸 권 기, '소 멸시'를 기준으로 소멸하였다.</p>
4.	<p>소멸권 기 - 각기소멸 따라서 기 <u>원격</u> 복제된 저작권이 소 멸권이 <u>소멸권</u> 기가 <u>권</u> <출></p>

16.5

<문제 4>

7. 실문 11

2

1. 특정권 행사판단

(1) 간접

① 등장. 특허 출원 간접 판판하며 ② * 실권 등한
심판장이 특별한 이유가 없다.

(2) 취득

간접권은 본가 특허한 심판장이 생긴다면 특허 권
직권은 본가야 하므로, 특별권은 권리 행사가 선택
받은 간접권 이점이 특허한다면 특허 권리이다.

2.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1) 취득

출원권 특이성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그와 같
은 변화로 출원하여 특허권 행사권판단시 고려
하여야 한다.

(2) 특정권 행사상 심판권 취득

특정권 행사상 심판권 특허 판판시에는, 같은 상태
에서 변형하여 판판하되, 출원권 특이성으로 출원한
다.

(3) 특정권 행사상 심판권 취득

특정권 행사를 출원권 특이성 상태가 특정권 행사상
판판한 경우 특허 권리로 보되, 출원권 특이한



특히 비특사르 볼 수 있다.

II 범용(2)

9.5

1. 무효심판 취소. 취지 - 법 제 122

증거상, 허위 기재 당사원은 소멸시키기 위한 게
이다.

2. 이해관계인 명목 - 주

분쟁

(1) 취지 - 법 제 122 항 1

이해관계인. 심사원은 무효심판의 취지가 가능하

(2) 이해관계인의 취지 - 취지

법률상 불이익을 받아 당사원의 소멸이 적절하
고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말하며, 현재 관
련 물건을 제3. 판에 할 수 있는 아니나 권리에 기
3. 판에 할 수 있는 포함한다.

(3) 사안과 주

그런 경우 당사인 A가 취지 심사한 것을 이유로
실시 주이며, 정당한 증거 없는 이해관계인에 해
당한다.

3. 신규성 기반 명목 - 주

(1) 신규성 취소. 취지 - 법 제 122 항

중의 당사원은 만일 권리 재산권 특권이 권리
하는 것이 불합리 한 바, 중의 당사원도 동일

나타나 있어, 각각의 경우 판례시 사용 상태의 형태 역시 여러 가능하다.

5) 결론

특정 각각의 A와 선행 각각은 각 지체적 결합한 형태가 여러 존재하며, 특히 특허권 심의장은 권리권은 타 특허이다.

4. 우선심판 절차 - 인용심결

① 2차 우선심판 항소가 가능한 이해관계인이거나 ② 선행 각각이라 특정 각각의 A가 여러 존재하여 선행권자인 타 ③ 인용심결이 계승된다.

<이하 면백>

11.5